

서울특별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848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3. 07. 03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조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안 제3조제3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함.
- 안 제4조제2항제4호의 ‘최저주거기준 확대’는 주거약자법 제8조에서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 ‘강화된 최저주거기준’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바,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3호 중 “법 제8조의 주거기준 적용 및 제9조의 편의시설”을 “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며, 법 제9조의 편의시설”로 수정함.
- 안 제4조제2항제4호 중 “확대,”를 “적용 확대 및”으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호 중 “법 제8조의 주거기준 적용 및 제9조의 편의시설”을 “법 제8
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며, 법 제9조의 편의시설”으로 한다.

안 제4조제2항제4호 중 “확대,”를 “적용 확대 및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법 제9조의 편의시설”을 “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며, 법 제9조의 편의시설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 적용 확대 및 개선방안과 법 제9조의 안전기준 적용 확대에 대한 사항

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8조와 제9조의 기준 적용현황 및 주거약자의 편의수요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, <u>법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</u></p>	<p>제3조(책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----- -----, <u>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며, 법 제9조의 편의시설</u>----- ----- -----</p>
<p>제4조(주거지원계획의 수립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4조(주거지원계획의 수립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 적용 확대 및 개선방안과 법 제9조의 안전기준 적용 확대에 대한 사항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<p>제5조(주거실태 조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5조(주거실태 조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법 제8조와 제9조의 기준</u></p>

4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적용현황 및 주거약자의 편의
수요에 관한 사항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